

# 조세 · 재정 BRIEF

## 미국의 대선과 미국재정의 향배

### 요 약

- 미국 연방정부 채무 한도 증액 논란 및 재정절벽 실현 가능성 등 미국 재정여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 대선 후보들의 공약 사항들이 향후 미국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미국 연방정부 총채무는 9월 12일 현재 16조 463억달러 수준에 달했으며 2012년 말 채무 한도 증액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
  - 최근 미국의 재정적자는 월 평균 1,080억달러씩 증가하며 FY2012에도 1조달러 초과하는 재정적자가 발생할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건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Super Committee)의 재정적자 감축방안 합의안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예산통제법(BCA)의 규정대로 2013년 1월부터 강제삭감조치 예정
- 선별적 증세를 주장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세수 중립적 감세를 주장하는 롬니 후보의 조세정책 공약에 대한 논쟁은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와 경제성장을 위해 어떤 후보의 정책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
  -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롬니 후보의 세제개편안을 고소득층에 유리한 역진적 개편안으로 평가하고 롬니 후보의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감세정책은 세수중립적일 수 없다고 비판

○ Wall Street Journal은 과거 1986년의 감세정책에 대한 CBO와 Martin Feldstein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롬니 후보의 정책을 지지

□ 재정 지출 이슈 중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을 폐기한다는 롬니 후보의 공약에 대한 CBO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출 축소규모를 초과하는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인해 롬니 후보의 공약은 재정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

○ 포브스지는 CBO의 분석결과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가능하다고 비판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국 재정적자의 합리적 수준을 2.5%로 설정할 경우 2012년 기준 GDP의 3% 수준의 구조적 재정적자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

○ 이외에도 예산정책연구소는 롬니 후보의 공약이 재정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반면, 하원 예산위원회는 현재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현 정부안보다 재정적자를 3조달러 이상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석

□ 재정여건의 개선 징후는 찾아보기 어렵고 2013년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나, 세입증대와 지출삭감을 위한 뚜렷한 해법이 없고 상당부분 정치과정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며 재정건전성 개선은 기대난망

○ 정치일정상 연말 이전에 채무 한도의 상향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재정절벽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신정부 출범 전에 합의 도출 가능성은 상존

□ 해외 충격에 의한 경제위기에 취약하고 남북통일에 항시 대비해야 하는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 필요

○ 국가채무의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상향조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도록 '국가채무 한도제'를 도입할 필요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올바른 참정권 행사 지원을 위해 독립적 평가기구에 의해 분석된 선거공약들이 향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

## I 미국의 재정상황

### 1. 최근 미국 채무수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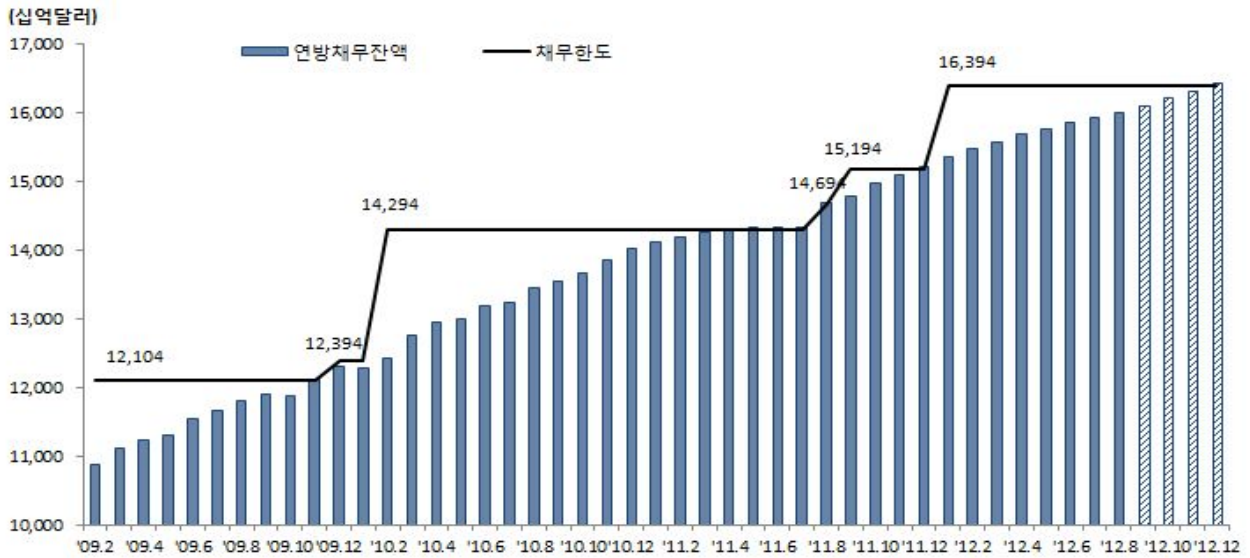
- 2011년 8월, 9월, 그리고 2012년 1월에 법정 채무 한도 증액으로 현재 16조 3,940억달러의 채무한도가 설정되어 있지만, 연방정부 총채무는 9월 12일 현재 16조 463억달러에 달하며 약 3,500억달러의 채무증가 여유분이 남은 상황
  - 1월 27일 이후 9월 12일까지 약 7.5개월 동안 월 평균 1,080억달러씩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연말쯤 채무한도 증액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
  - 2011.10~2012.8의 기간 동안 재정적자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6% 축소된 상황이나 여전히 FY2012에도 1조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재정적자 발생 전망
- 특별위원회(Super Committee)가 최소 1조 2천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에 의해 2013년 1월 2일부터 강제삭감조치(sequestration)가 시행될 예정
  -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은 강제적 재정지출의 축소와 감세조치들의 종료에 의해 경제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을 말하며 경제주체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중
  - 대선 이후 행정부와 의회가 예산통제법에 의한 재정절벽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채무한도를 증액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
    - 이미 9월 7일 앨런 웨스트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은 예산통제법에 따라 시행될 강제삭감조치를 완화할 ‘국가 안보와 고용보호 법률(H.R. 6365)’을 발의<sup>1)</sup>
    - 이에 대해 백악관은 9월 12일 성명서를 통해 웨스트 하원의원의 법안의 위헌 가능성과 대안으로서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의회 통과 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발표<sup>2)</sup>

1) National Security and Job Protection Act, H.R. 6365, 112th Congress, 2d Session. (Sept. 7, 2012)

2) 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 H.R. 6365-National Security and Job Protection Act, Sept. 12, 2012 (Rep. West, R-FL, and 2 cosponsors)

#### 4 미국의 대선과 미국재정의 향배

[그림 1-1] 최근 연방정부 채무수준과 채무한도 추이



자료: Department of Treasury, "Monthly Statement of the Public Debt"

<표 1-1> FY2012<sup>1)</sup>의 월별 재정현황 비교: 월별 누계 기준

(단위: 십억달러, %)

	수입			지출			재정적자		
	FY2011	FY2012	증감률	FY2011	FY2012	증감률	FY2011	FY2012	증감률
10월	146.0	163.1	11.7	286.4	261.5	-8.7	140.4	98.5	-29.9
11월	294.9	315.5	7.0	585.7	551.2	-5.9	290.8	235.8	-18.9
12월	531.8	555.4	4.4	900.8	877.2	-2.6	369.0	321.7	-12.8
1월	758.3	789.8	4.1	1,177.1	1,138.9	-3.2	418.8	349.1	-16.6
2월	869.0	893.2	2.8	1,510.3	1,474.0	-2.4	641.3	580.8	-9.4
3월	1,019.9	1,064.4	4.4	1,849.3	1,843.4	-0.3	829.4	779.0	-6.1
4월	1,309.4	1,383.2	5.6	2,179.2	2,103.1	-3.5	869.8	719.9	-17.2
5월	1,484.4	1,563.9	5.4	2,411.8	2,408.4	-0.1	927.4	844.5	-8.9
6월	1,734.0	1,824.1	5.2	2,704.6	2,728.3	0.9	970.5	904.2	-6.8
7월	1,893.1	2,008.7	6.1	2,993.0	2,982.5	-0.4	1,099.9	973.8	-11.5
8월	2,062.3	2,187.5	6.1	3,296.4	3,351.9	1.7	1,234.0	1,164.4	-5.6
9월	2,302.5	-	-	3,599.3	-	-	1,296.8	-	-

주: 1) 미국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9월까지로, FY2012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를 의미함

자료: Department of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Sept. 2012. Table 1을 재구성

## 2. 미국 재정악화 배경과 오바마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

□ FY2002에 재정적자로 반전되며 시작된 미국 재정악화는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에 기인한 재정수입의 감소와 9.11 테러 이후 국방지출의 급증에 기인하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심화<sup>3)</sup>

□ 부시 행정부('01.1~'09.1, 공화당)

-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한 감세정책(Bush tax cuts) 등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9.11테러 이후 국방지출이 급증하면서 FY2002에 재정적자로 전환
  - FY2001에 1.3%였던 재정수지는 FY2002에 재정적자(GDP대비 1.5%)로 전환되고 FY2008에 -3.2%까지 적자폭 확대
  - 총채무는 FY2001에 3조 3,196억달러(GDP대비 32.5%)수준에서 FY2008에 5조 8,031억달러(GDP대비 40.5%)로 급증했으며 총채무 법정한도는 7회 증액됨
    - ('97.8) 5조 9,500억달러 → ('08.10) 11조 3,150억달러로 한도 증액(5조 3,650억달러 상향)
- 2004년도에 분야별 지출상한 설정 및 PAYGO 준칙 적용 등의 재정건전화 조치를 담고 있는 “지출통제법안(Spending Control Act; 이하 SCA법안)”을 추진하였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법제화에 실패

□ 오바마 행정부('09.1~현재, 민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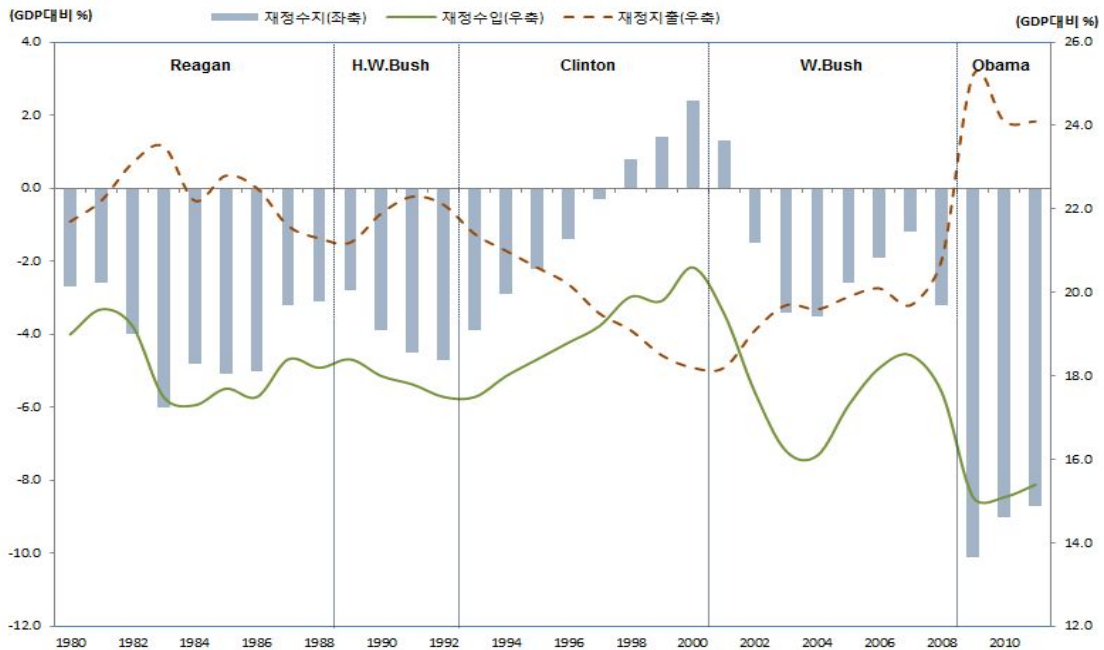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부실자산 매입 및 지급보증,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
  - FY2009의 재정수지가 GDP대비 -10.1%에 달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정적자를 시현
  - 연방정부 채무는 FY2011에 10조달러(GDP대비 67.7%)를 넘어서면서 1950년도(GDP대비 80.2%)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총채무 법정한도 또한 2012년 현재까지 총 6차례 증액됨
    - ('08.10) 11조 3,150억달러 → ('12.1) 16조 3,940억달러로 한도 증액(5조 790억달러 상향)
- 2010년에 “세출·세입 연계 적자 중립화법(Statutory Pay-As-You-Go Act; 이하 PAYGO법)”과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이하 BCA법)”을 법제화
  - PAYGO법: 의무 지출과 조세관련 법안은 모두 PAYGO 준칙을 영구 적용

3) 이하의 행정부별 건전화 조치는 인태환(2011)에서 인용

## 6 미국의 대선과 미국재정의 향배

- BCA법: 총채무 법정한도 상한 3단계 증액, 재량지출에 대한 지출상한제 도입, 균형예산 의무화 헌법개정안 마련 및 찬반투표 시행,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위원회 설치
- 민간연구소인 예산정책연구소(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CBPP)는 경제침체와 부시행정부의 정책이 대규모 재정적자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
  - 경제침체로 인한 재정적자는 향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및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일시적 요인임
  - CBPP 보고서 발표 당시 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은 향후 재정적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했으나 2012년도 말에 일몰 종료되므로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임

[그림 1-2] 재정수지와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추이



자료: OMB,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3*, Historical Tables.

## 3. 오바마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효과

### 가. 재정건전화 조치에 따른 2013년도 경제재정 전망<sup>4)</sup>

4) “Economic Effects of Reducing the Fiscal Restraint That is Scheduled to Occur in 2013,” CBO (2012.5) 재구성  
 - 동 보고서는 “*Updated Budget Projections: Fiscal Years 2012 to 2022* (2012.3.13)”의 수치를 근거로 분석

- CBO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재정건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FY2013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약 5,600억달러 감소하지만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
- 현행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재정적자는 FY2012의 1조 1,710억달러에서 FY2013에 6,120억달러로 약 5,600억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세금 감면조치 종료에 따른 세입효과는 약 3,990억달러, 각종 지출억제 정책에 따른 효과는 1,0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

**<표 1-2> 재정건전화 정책에 따른 재정적자 감축 효과**

(단위: 십억달러)

재정건전화 정책	효과
(세입관련 정책)	399
·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감면혜택 종료(2012.12.31) 및 AMT 인플레이션 연계 종료	221
· 급여세(payroll tax)의 근로자 부담분 감면 종료	95
· 기타 감면 조치 종료	65
·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에 포함된 세금	18
(지출관련 정책)	103
·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으로 인한 지출 삭감	65
· 긴급 실업급여 지급 중단	26
· 의사들에 대한 메디케어 의료수가 감축	11
(기타)	
· 기타 세입과 지출 변화	105
· 경기위축 영향	-47
<b>총 변화</b>	<b>560</b>

자료: "Economic Effects of Reducing the Fiscal Restraint That is Scheduled to Occur in 2013," CBO (2012.5)

- 현행 정책은 2013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1.1%(2012.1월)에서 0.5%로 낮추고 취업자 수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단기적 성장억제 유발
  - 현행 재정긴축 정책을 모두 시행할 경우, 2013년 경제성장률은 관련 정책이 전면 유보될 경우보다 3.9%p나 낮은 0.5%로 전망
  - 현행 정책이 전면 유보될 경우 취업자 수는 200만명 증가하지만, 일부만 유보될 경우 130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분석

## 8 미국의 대선과 미국재정의 향배

**<표 1-3> 정책강도에 따른 2013년 경제성장률(인플레이션조정) 및 취업자 수**

(단위: 전기대비 연율(%), 백만명)

		상반기 <sup>1)</sup>	하반기 <sup>1)</sup>	연중 <sup>1)</sup>
성장률	현행 재정긴축정책	-1.3	2.3	0.5
	재정긴축 정책 시행 전면 유보	5.3	3.4	4.4
	긴축조치 일부시행 <sup>2)</sup>	1.2	2.5	2.1
취업자	재정긴축 정책 시행 전면 유보	1.1	2.9	2.0
	긴축조치 일부시행 <sup>2)</sup>	0.9	1.8	1.3

주: 1) 상반기 2012.4~2013.2분기, 하반기 2013년.2~4분기, 연중 2012.4~2013.4분기

2) 세제혜택(급여세 감면 제외) 연장, 최저한세(AMT) 인플레이션 연동, 의사들의 의료수가 현행 유지, 예산통제법에 따른 재량지출 삭감 미시행

- 현행 재정긴축이 시행될 경우 단기적 성장효과는 부정적일지라도, 장기적으로 재정적자 및 총채무 등 재정여건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
  - 재정적자는 FY2012에 GDP 대비 7.6%에서 FY2022에 1.2%, 연방정부 총채무는 FY2012에 GDP 대비 73.2%에서 FY2022에 61.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반면, 재정 건전화 조치가 일부만 유보되어도 정부채무와 재정적자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

**<표 1-4> 재정건전화 정책에 따른 장기전망**

(단위: GDP대비 %)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22	FY2013~FY2022
현행 정책	재정적자	7.6	3.8	2.3	1.5	1.4	1.2	1.4
	연방정부 채무	73.2	75.8	75.8	73.3	70.9	61.3	-
일부 시행	재정적자	7.7	6.3	5.8	5.0	5.0	5.9	5.3
	연방정부 채무	73.3	78.4	81.7	82.4	83.1	93.6	-

### 나. 재정건전화 조치에 따른 향후 재정전망<sup>5)</sup>

- 예산통제법을 토대로 2013년 시행될 재정건전화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 시계의 재정수지 및 연방

5) CBO, "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13 Budget"(2012.3.16) 및 CBO,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2012.8.22)" 재구성

채무 전망 CBO의 전망결과에 따르면, 감세정책 종료에 따른 효과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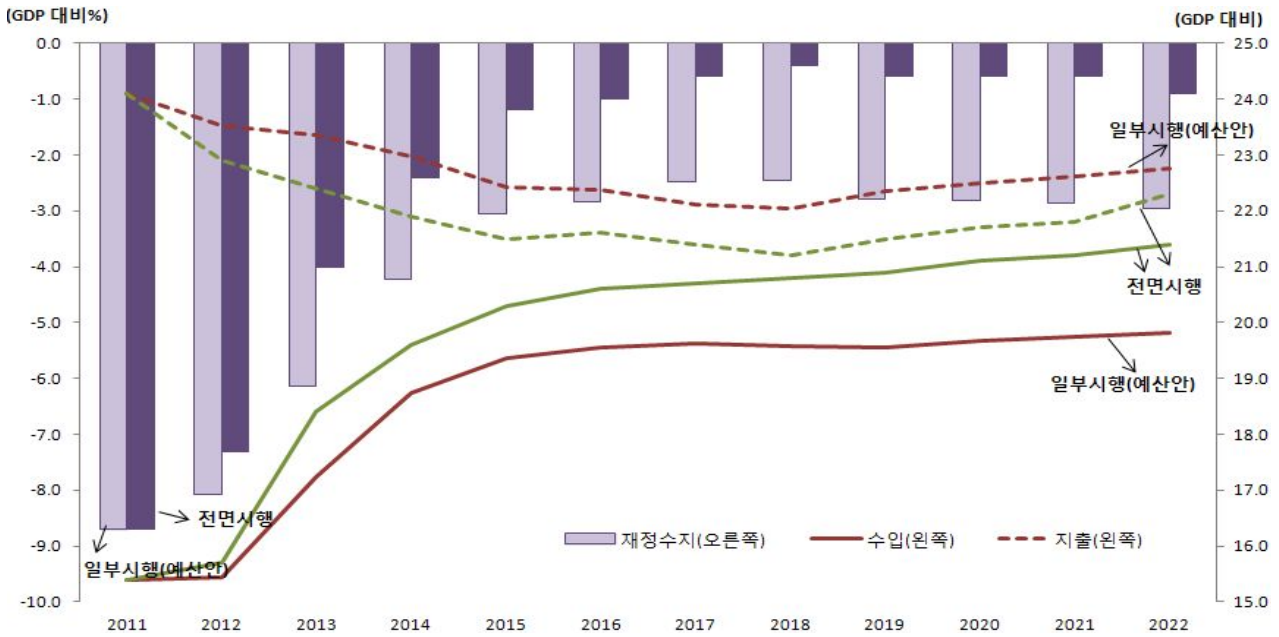
#### □ CBO 분석의 전제

- (전면 시행의 경우) 2013년 시행될 모든 재정건전화 조치들(예산통제법 및 세제개편 등)이 시행됨을 가정하여 전망(2012.8월 보고서)
  - BCA에 명시된 재정건전화 정책(향후 10년간 9,170억달러 감축 및 1.2조달러 자동삭감조치), 부시감세 조치 일몰종료 및 세제개편(긴급실업급여 지급기한 연장 종료 및 급여세율 2%p 삭감조치 종료 등), 의사들에 대한 의료수가 감액 등이 모두 시행되는 것을 전제
- (일부 시행의 경우) BCA에 명시된 재정건전화 정책 중 향후 10년간 9,170억달러 지출 감축, 부시행정부의 감세조치 중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만을 종료하는 내용을 전제(FY2013 예산안 분석 보고서)

#### □ CBO 분석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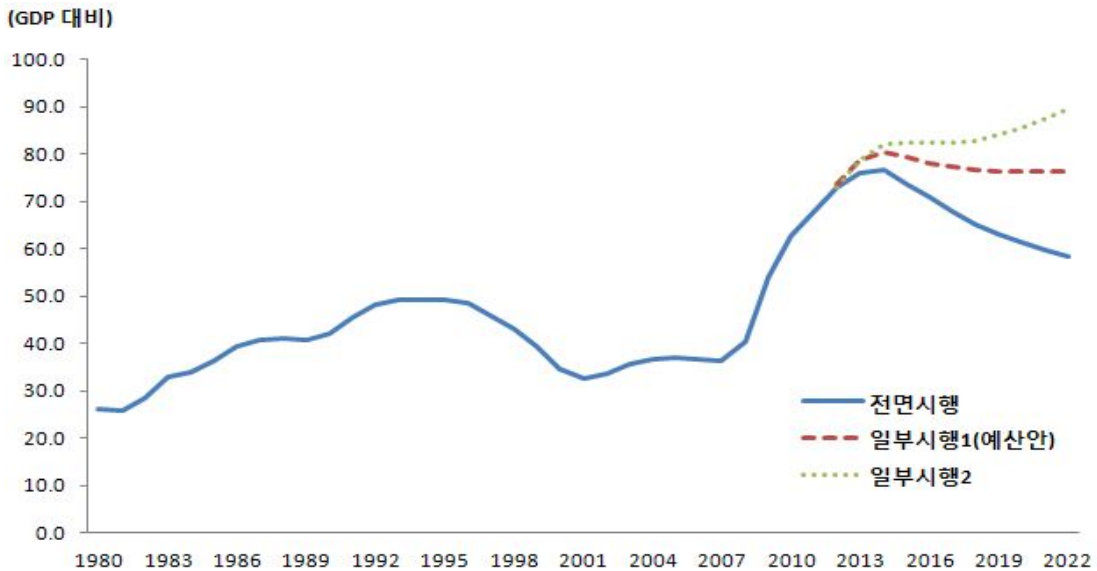
- (재정적자) FY2013-FY2022 평균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재정건전화 조치 전면시행의 경우 1.1%로 전망되며 일부만 시행되는 경우보다 2.1%p 개선
  - 전면시행의 경우,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은 1.2% 높고, 지출 비율은 0.8% 낮아져서 재정적자의 GDP 대비 비율이 10년간 총 2.1%p 개선
- (연방채무) 재정건전화 조치가 전면시행 되면 채무가 감소하지만, 일부만 시행될 경우는 시행강도에 따라 부채수준이 현 수준을 유지 또는 증가
  - 정부지출 삭감 및 고소득층 감세 폐지만 반영하는 경우, GDP 대비 연방채무 규모는 FY2011에 67.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FY2020부터 76.5% 수준 유지
  - 정부지출 9,170억달러 감축 조치만을 반영할 경우, GDP 대비 연방채무는 빠르게 증가하여 FY2022에 89.7%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
- (정책별 비교분석) 2013년 부시감세 등 세제혜택이 연장될 경우에는 GDP 대비 2.1%, 자동삭감 조치에 따른 재량지출 감축 등 지출삭감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0.4%의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림 | -3]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 강도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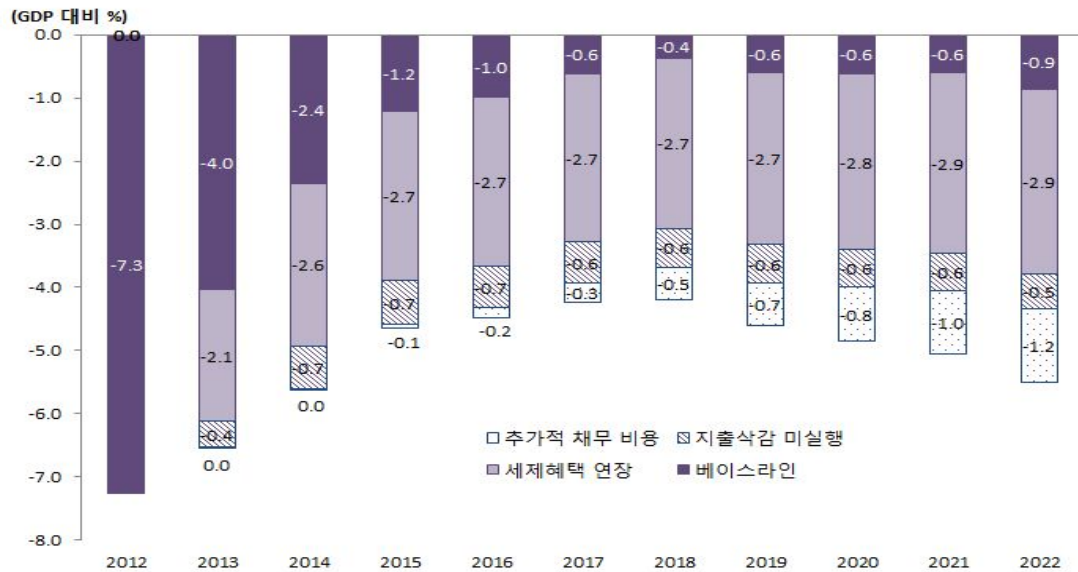
자료: CBO,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2012. 8. 22)

[그림 | -4]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 강도에 따른 연방채무 전망



주: 일부시행1: 예산안에 포함된 재정건전화 내용(정부지출 삭감 및 고소득층 감세 폐지)만 반영  
 일부시행2: 정부지출 9,170억달러 감축만 반영  
 자료: CBO, 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13 Budget (2012.3.16)  
 CBO,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2012.8.22)

[그림 | -5] 재정건전화 정책별 재정수지 전망



- 주: 1. 베이스라인은 재정건전화 정책이 전면 시행되는 경우의 효과  
 2. 세제혜택 연장(Tax Policy Extend)은 부시감세조치(급여세 감면 제외) 등을 연장하고, 최저한세(AMT)의 인플레이션 연동시킬 경우의 효과  
 3. 지출삭감 미실행(Prevent Spending Cut)은 의사들에 대한 메디케어 의료수가를 현행 유지하고(삭감 예정이지만 미반영), 예산통제법의 자동삭감 조항에 따른 재량지출 감축(2013년 1월 시행 예정) 미반영  
 4. 추가적채무비용은 연방채무의 추가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를 의미

자료: CBO,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2012.8.22)

II

## 대선 후보들의 주요 대선공약과 재정

### 1.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 비교

- 2012년 11월 6일 대선을 앞두고 경제 및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경제성장 및 고용증대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
- 민주당 후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증세와 확장적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역할의 확대를 주장
  - 고소득층에 ‘버핏 원칙(Buffett Rule)\*’을 적용함으로써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국방지출 및 소득보장 지출 삭감으로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확대
    - \* 버핏 원칙(Buffett Rule): 상위 1% 고소득층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의 인상과 자본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세율 인상을 통해 고소득 계층의 세부담을 중산층과 저소득 계층의 세부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인하하는 등 법인세 감세기조를 표방했으나 기업들의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계획
- 공화당 후보 미트 롬니(Mitt Romney)는 지출 억제와 함께 감세정책 및 규제완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
  - 롬니의 조세정책은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에 기초하여 감세에 따른 재정수입 축소에 상응하는 세입기반 확대 및 지출 축소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고용과 성장을 촉진할 계획
    - \*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세를 통해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고용과 소득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
  - 부시의 감세조치(Bush tax cuts)를 영구화하고 추가적으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28%로 인하하고 최저한세 제도를 폐지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등의 감세정책을 제안
  - 미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 축소를 반대하는 한편,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인 의료보험제도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통해 관련 지출의 축소를 주장

<표 II-1> 2012년 대선후보 주요 경제정책 비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 후보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
개인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산층 세액감면 1년 연장</li> <li>고소득층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감세혜택 종료로 2013년도부터 최고세율 환원</li> <li>연간 개인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 “Buffett rule”을 적용(최소 30% 세율로 부과)</li> <li>고소득층의 세금공제비율 축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간별 소득세율 20% 인하: 최고세율이 35→28%,</li> <li>Buffett rule 반대</li> <li>최저한세(AMT) 폐지</li> </ul>
자본이득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이득세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li> <li>고소득층의 배당소득을 통상적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li> <li>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인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자, 배당금, 자본이득에 대한 현행 세율 15% 유지</li> <li>- 단, 연소득이 20만달러 미만일 경우는 감면</li> <li>상속세 폐지</li> </ul>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인하</li> <li>특정산업에 대한 세금우대조치 폐지</li> <li>기업의 해외소득에 일정수준 이상 세금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5%로 인하</li> <li>해외소득에 대한 세금 폐지</li> <li>조세 허점(tax loophole) 축소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li> </ul>
보건 및 의료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개혁법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li> <li>(Medicare)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비용감축 위해 의료보험지급자문위원회 역할 강화</li> <li>(Medicaid) 2014년까지 빈곤층 소득의 133%에 해당하는 가구까지 혜택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 폐지</li> <li>(Medicare) 가입연령 상향조정, 정액금액 혜택으로 전환하는 보험료보조시스템 (premium support system) 제안</li> <li>(Medicaid)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포괄보조금(Block Grant)을 지원</li> </ul>
사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인 내용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연령 상향조정</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 등록금 인하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우처 제도 찬성</li> <li>연방교육부 규모를 축소해 주교육부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지원</li> </ul>
연방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7년까지 GDP대비 22.2%로 축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7년까지 GDP대비 20%로 감축</li> <li>- 비안보 재량지출을 2008년 수준 이하로 회귀</li> </ul>
재정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7년까지 GDP대비 2.5%로 축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균형재정(기한은 명시하지 않음)</li> </ul>

자료: The Economist, “Work in progress(2012.4.21),” 미트 롬니 사이트(www.mittromney.com)의 내용 및 동 후보의 Believe in America 공약집 재인용

14 미국의 대선과 미국재정의 향배

<표 II-2> 대선후보의 개인소득세 개편안 비교

(단위: %)

과표구간(\$)		0~8,750	8,751~35,500	35,501~86,000	86,001~179,400	179,401~199,350	199,351~390,050	390,050~
세 율	현행	10	15	25	28	33		35
	오바마	10	15	25	28	33	36	39.6
	롬니	8	12	20	22.4	26.4		28

주: 1. 세율은 장기자본이득을 제외한 개인소득세 세율이며, 과세소득 구간은 단일신고 기준  
 2. 미국은 납세자의 신분에 따라 단일신고(single),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 or qualified widow or widower), 부부개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세대주(head of household) 네 가지로 구분되며, 과세소득 구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자료: Tax Policy Center (<http://www.taxpolicycenter.org/taxtopics/index.cfm>)

<표 II-3> 대선후보의 법인소득세 개편안 비교

과표구간(\$)	현행세율	연방법인세율 <sup>1)</sup>	
		오바마	롬니
0~50,000	15%	법인세 상한선 28%	법인세 상한선 25%
5,0001~75,000	\$7,500 + \$50,000 초과분 25%		
75,001~100,000	\$13,750 + \$75,000 초과분 34%		
100,001~335,000	\$22,250 + \$100,000 초과분 39%		
335,001~10,000,000	\$113,900 + \$335,000 초과분 34%		
10,000,001~15,000,000	\$3,400,000 + \$100,000,000 초과분 35%		
15,000,001~18,333,333	\$5,150,000 + \$15,000,000 초과분 38%		
18,333,334~	단일세율 35%		

주: 1) 중앙, 지방정부의 법인세율(누진세율 구조 반영)을 고려한 일반적인 법인세율

자료: taxrates.cc (<http://www.taxrates.cc/html/us-tax-rates.html>)

2. 주요 공약에 대한 평가

가. 조세정책

- 미국 대선 후보들의 조세정책 공약에 대한 논쟁은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어떤 후보의 정책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

- 오바마 대통령은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과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선별적 증세방안을 제시
  - 연간 25만달러 이하 소득의 가구들은 부시감세 조치를 1년간 더 연장하지만 고소득 가구는 최고 39.6%의 세율로 과세
  -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7%p 인하하되 법인들의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기업들의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미국 국경 내에서 창출되도록 유도
  - 자본이득세의 세율은 현행 15%에서 고소득계층의 경우 20%로 인상하고 상속세의 최고세율도 45%로 10%p 인상할 계획
    -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재 35%이지만 2013년부터 55%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오바마의 공약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10%p 인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롬니 후보는 큰 폭의 세목별 감세안과 함께 세수중립성 확보를 위한 공제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및 조세허점(tax loophole)의 보완을 제시
  - 현행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5%를 28%로 인하하는 등 모든 소득구간별 세율을 20%씩 인하하고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반면 공제감면의 축소 및 폐지를 통해 세입 기반 확대
  - 법인세 최고세율을 10%p 인하한 25%로 제시했으나 공제 등 조세감면 규모를 축소하고 조세허점을 보완함으로써 추가적 세수를 확보할 계획
    - 미국, 아일랜드, 멕시코, 폴란드,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준용하고 있는 원천지국 과세원칙(territorial tax system)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들의 해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겠다는 입장
  - 연소득 20만달러 이하의 경우 기존 15%로 과세하던 자본이득과세를 면세하고 상속세를 완전 폐지
-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롬니 후보의 세제개편안을 고소득계층에 유리한 역진적 개편안으로 평가<sup>6)</sup>하며 암묵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개편안을 지지
- 소득분포 중위층(3분위)에는 2,130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이 발생하지만, 상위 1%는 23만 8천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감면액과 세후소득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개인소득세, 법인세, 급여세(사회보장·메디케어), 상속세에 대한 롬니 후보의 공약에 따른 평균 연방세율의 인하폭은 1~4분위의 경우 0.7~5.1%p 수준이지만, 5분위와 상위 1%의 평균 연방세율은 각각 8.9%p와 12.1%p로 보다 큰 폭으로 인하

6) "The Romney Tax Plan," Tax Policy Center(2012.3.1)

## 16 미국의 대선과 미국재정의 양배

- 롬니 후보의 주장대로 경제성장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수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위 5%계층에 속하는 연간 24만달러 이상의 소득 가구에게 발생한 대규모의 세수손실이 보다 낮은 소득계층으로 전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롬니 후보의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감세 정책은 세수중립적일 수 없다고 비판
- 고소득층의 감세규모는 860억달러이지만 과세기반 확충에 따른 세수확대는 530억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

**<표 II-4> 2015년 소득분위별 연방세 부담 변화**

(단위: %, 달러, %p)

소득분위 <sup>1)</sup>	세금감면 효과		세후소득 변화율	연방세 변화 비중	평균 연방세율 <sup>2)</sup>		
	인원	평균 감면액			현행 (A)	롬니공약 (B)	변화분 (B-A)
1분위(0-20%)	30.1%	-256	0.7	0.4	4.0	3.3	-0.7
2분위(20-40%)	84.6	-1,016	3.2	3.6	11.6	8.8	-2.8
3분위(40-60%)	97.6	-2,130	4.4	7.6	18.0	14.4	-3.6
4분위(60-80%)	99.4	-4,994	6.5	15.1	22.3	17.2	-5.1
5분위(80-100%)	99.9	-27,508	12.6	73.2	29.3	20.4	-8.9
<b>전체</b>	<b>77.4</b>	<b>-7,043</b>	<b>8.7</b>	<b>100.0</b>	<b>24.0</b>	<b>17.4</b>	<b>-6.6</b>
추가분석							
80-90%	99.9	-9,217	8.1	12.4	25.2	19.2	-6
90-95%	99.9	-14,846	9.3	9.8	26.5	19.6	-6.9
95-99%	100	-35,349	12.8	18.7	28.4	19.3	-9.1
상위 1%	100	-237,983	18.5	32.2	34.7	22.6	-12.1
상위 0.1%	100	-1,148,834	21.7	16.0	38.1	24.6	-13.5

주: 1) 소득분위(2011년\$ 기준 현금수입: cash income) 20% \$19,342; 40% \$39,862; 60% \$69,074; 80% \$119,546; 90% \$169,987; 95% \$242,597; 99% \$629,809; 99.9% \$2,868,534

2) 평균현금수입 대비 평균연방세율(개인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메디케어에 대한 payroll tax, 부동산세 포함)

3) 2012.3.1일까지 발표된 롬니 조세정책을 반영

자료: "The Romney Tax Plan," Tax Policy Center(2012.3.1)

- Wall Street Journal은 조세정책센터의 분석결과를 아래의 논거로 비판하고 롬니 후보의 개편안을 지지<sup>7)</sup>
- 롬니의 세수중립적 조세개혁안은 1986년 조세개혁안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감세의 역사는 이것이 유효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비판

7) "The Romney Hood Fairy Tale," *Wall Street Journal*, A14, Aug. 8, 2012.

- 지난 50여 년 동안 주요 개인소득세 감세정책(1964년, 1981년, 1986년, 2003년)은 지속적 세율인하를 근간으로 진행됐으나 세수증대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세수증대는 주로 부유층의 세부담 확대로 누진성이 강화됐음을 주장
  - 한계세율이 70%이던 시기에 상위 1%가 연방소득세의 18%를 납부하였으나 세율이 35%로 인하된 2008년 상위 1%의 세부담 비중이 40%로 확대
- 1986년 단행된 감세정책은 고소득계층의 세부담 비중을 21%에서 25%로 높였다는 CBO와 Martin Feldstein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세수중립적 감세정책의 가능성과 효과를 주장
  - 1986년 조세개혁에 의해 부유층들의 과세대상소득이 증가한 것은 조세피난처의 축소와 많은 기업들이 과세지위를 법인에서 개인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S-법인(S-corporation)으로 변경한 것에 기인
- 이러한 감세의 역사는 롬니의 세수 중립적 감세정책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
  - 현재 부유층이 많은 부분의 조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조세허점 보완에 의한 세입기반 확대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
  - 납세자의 3분의 1 이상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 중 대다수가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이는 조세가 아니라 정부지출이기 때문에 감축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Wall Street Journal은 오바마 정부의 재정개혁을 관장하는 심슨-보울스 위원회(Simpson-Bowles Commission)의 재정개혁안이나 롬니의 개혁안은 세수 중립성이란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롬니의 공약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동 위원회의 개혁안도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
- 롬니의 개혁안이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인데도 조세정책센터(TPC)가 임의적으로 투자와 저축 관련 조세지출을 줄일 수 없다고 가정하여 연구결과가 왜곡됐다고 비판<sup>8)</sup>
  - 조세정책센터(TPC)는 저축과 투자의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지방정부채권과 생명보험저축에 대한 조세지출을 폐지할 수 없다고 가정했지만,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는 두 가지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가 900억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할 경우 저소득층에 재분배 가능한 860억달러를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세원이라고 분석<sup>9)</sup>

8) Wall Street Journal, "Mathematically Possible," A14. Aug. 14, 2012.

나. 보건·의료부문

- 대다수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을 폐지할 경우(롬니공약)의 재정효과에 대한 CBO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sup>10)</sup>
- 이 경우 재정수입 감소분이 지출 감소분을 초과하여 FY2022까지 재정적자는 총 1,090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II -5> 건강보험 개혁법(ACA) 폐지에 따른 재정효과

(단위: 십억달러)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FY2022	FY2013~FY2017	FY2013~FY2022
재정 수입	예산	- 34	- 40	- 64	- 69	- 79	- 145	- 285	- 896
	예산 외	- 2	- 2	- 3	- 7	- 9	- 19	- 23	- 103
	합계	- 36	- 42	- 67	- 75	- 88	- 163	- 308	- 1,000
재정 지출	예산	- 2	- 18	- 61	- 101	- 118	- 117	- 299	- 882
	예산 외	0	—	- 1	- 1	- 1	- 1	- 2	- 8
	합계	- 2	- 18	- 61	- 102	- 119	- 119	- 302	- 890
재정 적자	예산	32	22	3	- 32	- 39	27	- 14	14
	예산 외	2	2	3	6	8	17	21	95
	합계	34	24	6	- 26	- 31	44	7	109

자료: “Letter to the Honorable John Boehner providing an estimate for H.R. 6079, the Repeal of Obamacare Act,” CBO(2012. 7)

- 오바마 케어가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늘려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CBO의 분석 결과에 대해 포브스지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제기<sup>11)</sup>
- CBO의 분석에서는 건강보험료 비용은 지속적으로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므로 점점 더 많은 개인이 “캐딜락세(Cadillac tax)”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기준보험료 이상의 고가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초과된 보험료에 대해서 40% 소비세(excise tax)

9) Jensen, M. (2012), “How the Tax Policy Center could improve its Romney tax study?”, AEI, August 9, 2012.

10) “Letter to the Honorable John Boehner providing an estimate for H.R. 6079, the Repeal of Obamacare Act,” CBO(2012.7)

11) “CBO: Obamacare Will Spend More, Tax More, and Reduce the Deficit Less Than We Previously Thought,” Forbes(2012.7.27)

를 보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캐딜락세라고 함

- 기준보험료: 개인은 1만 200달러 이상, 가족단위는 2만 7,500달러 이상
- 오바마 케어에 의해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건강보험료가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야 가능하고 상기 캐딜락세 증가분을 고려하면 재정적자 개선 효과는 대부분 상쇄

#### 다. 재정건전성

-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FY2012 GDP의 3% 수준에 달하는 구조적 재정적자규모를 축소해야 하지만 한 해에 축소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2016년까지 이행할 것을 권고<sup>12)</sup>
  - 동 연구결과는 미국 재정의 바람직한 중장기 모습으로 ‘세수는 GDP의 18 ~ 19%, 정부지출은 GDP의 20~22%, 재정적자는 GDP의 2~3%’ 수준을 제시
  - 미국 재정적자의 합리적 수준을 2.5%로 설정할 경우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중기의 구조적 재정적자 규모는 FY2012에 GDP의 3% 수준으로 약 4,8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동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조적 재정적자 축소 규모는 2013년 재정절벽에 따른 재정적자 축소 폭의 60% 수준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세입확충에 중점을 두는 반면 롬니 후보는 대규모의 감세와 더불어 정부지출 축소를 주장하는 현재의 정치상황을 비판
- 버핏세와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선별적 증세계획은 기대한 만큼의 세수확대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의회의 조세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FY2013 예산안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2.39조달러의 세수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CBO는 2.08조달러의 세수손실을 추정<sup>13)</sup>
    - CBO는 2001~03년 부시 감세조치를 모두 폐지하면 향후 10년 동안 2.84조달러의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sup>14)</sup>

12) Cline, W. R., “Restoring Fiscal Equilibrium in the United States,” No. PB 12-15, *Policy Brief*,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2.

13) JCT (Joint Committee on Taxation, US Congress), *Estimated Budget Effects of the Revenu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President’s Fiscal Year 2013 Budget Proposal*, Washington, 2012.; CBO, *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13 Budget*, Washington, 2012.

14)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Washington, 2012.

## 20 미국의 대선과 미국재정의 향배

- 따라서 상기 언급한 JCT와 CBO의 세수손실 추정결과는 부시 감세조치 완전 폐지에 따른 세수 확대의 73~84%에 달하는 수준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 세수확대를 급격히 도모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 오바마가 제시한 버핏세는 향후 10년 동안에 약 430억달러의 세수를 확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됨<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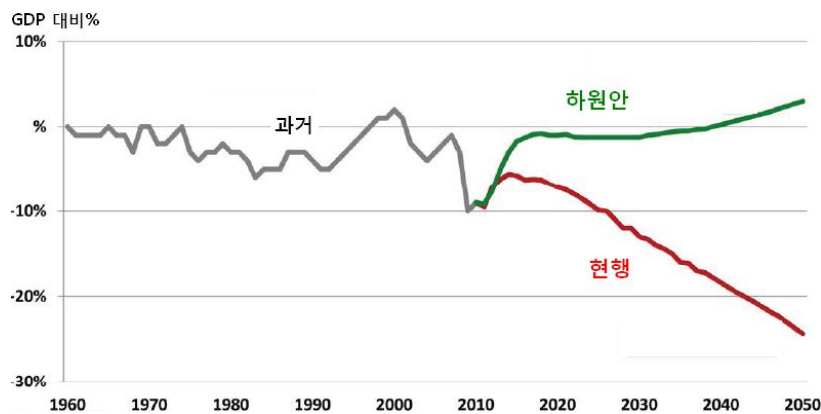
□ 예산정책연구소(CBPP)는 조세정책센터(TPC)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롬니 후보의 공약이 재정적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석<sup>16)</sup>

- 동 센터의 전문가들은 롬니 후보는 낮은 세율을 상쇄시킬 수 있는 넓은 과세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제시한 모든 목표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지속될 경우,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하원 예산위원회 (House Budget Committee)는 분석<sup>17)</sup>

- 하원 예산안의 경우, 향후 10년간 현정부안 대비 약 3조달러 이상의 재정적자 감소가 기대되고 정부지출은 FY2015까지 GDP 대비 20% 이하(현 정부안은 GDP 대비 약 24% 수준)로 축소될 전망

[그림 II-1] 하원의 재정적자 전망치



자료: House Budget Committee(2012. 3)

15) Dixon, Kim and Temple-West, Patrick, "Q+A: The 'Buffett Rule,' a Minimum Tax on the Rich," Reuters, April 16, 2012.

16)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Can Governor Romney's Tax Plan Meet Its Stated Revenue, Deficit, and Distributional Goals at the Same Time?," 2012.

17) House Budget Committee, "The Path to Prosperity," 2012.

## III

## 미국 재정의 항배 및 시사점

-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는 찾아보기 어렵고 2013년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며 최근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할 가능성을 발표
  - 무디스는 현재 진행 중인 FY2013 예산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의 협상에서 GDP 대비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수준을 하향안정화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Aaa/부정적 전망’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
  - 정치일정과 미국의 정치과정을 고려할 때 법정 채무한도를 연말 이전에 상향조정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재정절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신정부 출범 전에 합의 도출 가능성 상존
    - 그러나 지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고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현 오바마 정부가 채무한도를 다시 상향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오바마 정부도 채무한도를 연말 이전에 상향조정하지는 못하더라도 과거 클린턴 정부에서처럼 임시조치를 통해 채무 불이행 위기를 넘길 가능성이 큼
    - 과거 클린턴 정부 1기말에 발생한 예산위기(budget crisis) 시 법정 채무한도 상향조정이 필요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채무한도 증액에 실패하고 두 차례의 연방정부 폐쇄가 발생했으나 임시조치를 통해 예산위기를 극복하고 당시 공화당 대선 주자였던 돌(Bob Dole)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해결
      - 상기 임시조치가 만료되기 하루 전인 1996년 3월 29일에 법정 채무한도를 5조 5천억달러로 상향조정
- 채무한도 이외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세입증대와 지출삭감이 요구되지만 명확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며 누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양 후보의 공약사항들이 재정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없음
  - 제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사항들의 핵심인 선별적 증세는 재정적자 감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대폭적 감세와 재정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롬니 후보의 공약은 더 큰 재정적자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과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함께 제시되며 논란

## 22 미국의 대선과 미국재정의 향배

-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되는 시나리오가 유력시되고 있어서 의회와 행정부의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
  -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양원의 다수당으로 확정되면, 국방지출이 크게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통제법의 대체법안이 입법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재정여건은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큼

□ 전 세계적 재정위기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회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유로존과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경제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가 재정위기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적 확대 기조를 유지 및 강화하고 있으나 추가적 정책 수단은 고갈되어 가는 상황
- 최근 지속되는 양적완화 정책과 초저금리 수준의 장기화는 추가적 유동성 공급의 효과를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며 최근 주요국의 양적 확대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
  - 전 세계적 양적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음

□ 재정건전성 확보와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운용이 필요하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 및 남북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

-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채무 한도제’를 도입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한도를 설정하고 국가채무 한도를 상향조정할 때 보다 심도 있는 논의에 기초하여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필요
- 중립적 평가기구에 의해 각종 선거 공약사항들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참정권 행사를 지원할 필요
  - 미국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은 미국 정부 및 의회기관들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 연구기관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유권자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에 기여
  - 그러나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1 총선에 이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공약사항들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발표하려던 기획재정부의 시도를 선거중립의 의무 준수를 이유로 금지

## 참고문헌

- 이은경,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10. 3.
- 인태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재정준칙 法制化 노력: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11.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 예산안』, 각 년도.
- 한국조세연구원, 『KIPF 재정동향』, 각 호.
- Cline, W. R., “Restoring Fiscal Equilibrium in the United States,” No. PB 12-15, *Policy Brief*,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2.
- Dixon, Kim and Temple-West, Patrick, “Q+A: The ‘Buffett Rule,’ a Minimum Tax on the Rich,” Reuters, April 16, 2012.
- Mitt Romney, “Believe in America,” September 6, 2011. (공약집)
- Jensen, M. (2012), “How the Tax Policy Center could improve its Romney tax study?,” AEI, August 9, 2012.
- CBO, “Updated Budget Projections: Fiscal Years 2012 to 2022,” March 13, 2012.
- CBO, “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13 Budget,” March 16, 2012.
- CBO, “Economic Effects of Reducing the Fiscal Restraint That is Scheduled to Occur in 2013,” May 22, 2012.
- CBO, “Letter to the Honorable John Boehner providing an estimate for H.R. 6079, the Repeal of Obamacare Act,” July 24, 2012.
- CBO,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August 22, 2012.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Special Series : Economic Recovery Watch,” May 10, 2011.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Can Governor Romney’s Tax Plan Meet Its Stated Revenue, Deficit, and Distributional Goals at the Same Time?,” 2012.
- Citizens for Tax Justice, “How Mitt Romney and President Obama Would Fare Under Their Two Competing Tax Plans,” June 4, 2012.
-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Primary Numbers: The GOP Candidates and the National Debt,” Washington, 2012.
- Department of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September, 2012.
- Department of Treasury, “Monthly Statement of the Public Debt,” 매 월호
- Forbes, “CBO: Obamacare Will Spend More, Tax More, and Reduce the Deficit Less Than We Previously Thought,” July 27, 2012.
- House Budget Committee, “The Path to Prosperity,” March 20, 2012.
- Joint Committee on Taxation, “Estimated Budget Effects of the Revenu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President’s Fiscal Year 2013 Budget Proposal,” Washington, 2012.
- Kaiser Family Foundation, “Side-by-side comparison of major health care reform proposals,” April 21, 2010.
- National Commission on Fiscal Responsibility and Reform, “The Moment of Truth,” December. 2010.
- OMB,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3,” February, 2012.
- Tax Policy Center, “The Romney Tax Plan,” March 1, 2012.
- The Economist, “Work in progress,” *The Economist*, April 21, 2012.
- Wall Street Journal, “The Romney Hood Fairy Tale,” *Wall Street Journal*, A14, August 8, 2012.
- Wall Street Journal, “Mathematically Possible,” *Wall Street Journal*, A14. August 14, 2012.

인터넷 자료

<<http://www.barackobama.com/>>, <<http://www.mittromney.com/>>

<<http://www.taxpolicycenter.org/>>, <<http://www.taxrates.cc/html/us-tax-rates.html>>

작성자: 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02-2186-2481)